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
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
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63
----------	-----

2021. 10. 14.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옥규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-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이옥규 의원)

가. 제안사유

- 법령의 명칭과 약칭을 사용하고,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법령의 명칭과 약칭의 사용(안 제4조)
 - 영 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
 - 법 →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13조)
 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
- 인용법령 제목 띄어쓰기(안 제2조 및 안 제13조)
 -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→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
 - 「건설기술진흥법」 → 「건설기술 진흥법」
 -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호선 → 선출
 - 개의 → 개의(開議)
 - 없는 한 → 없으면

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- 이번 개정조례안은 주요내용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법령의 명칭과 약칭을 사용하고, 인용법령의 명칭변경 및 띄어쓰기를 하였으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
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
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선”을 “선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
중 “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”를 “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
2조”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「건설기술진흥법」”을 “「건설기술 진
흥법」”으로, “관련법령”을 “관련 법령”으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위원회는 영 제108조”를 “위원회
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
“영”이라 한다) 제108조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
설하며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,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
제5호 및 제6호로 한다.
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
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제5조제2항 중 “개의”를 “개의(開議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여
서”를 “해서”로 한다.

제5조의2제1항제2호 중 “당 사자”를 “당사자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하”로 한다.

제9조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4호 중 “아니한”을 “않은”으로 한다.

제11조 본문 중 “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
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13조 본문 중 “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
지방공무원 여비조례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</p> <p>4. 「건설기술진흥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</p> <p>5. 삭제</p> <p>6. 7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</p> <p>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</p> <p>6.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<u>영 제108조</u>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 <신설></p> <p>5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6.·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「<u>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</u>」(이하 “<u>영</u>”이라 한다)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<u>법</u>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</p> <p><삭제></p> <p>5.·6. (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<u>하</u>여서는 아니된다.</p>	<p>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<u>개의(開議)</u>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</p> <p>③ 위원장은 심의를 함에 있어 심사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에 참석하게 <u>해</u>서는 아니된다.</p>
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<u>당사자</u>인 경우</p>	<p>제5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심의대상 안건의 <u>당사자</u>인 경우</p>
<p>②·③ (생략)</p>	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소위원회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</p>	<p>제6조(소위원회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임하되 5명 이상 10명 <u>이내</u>로 구성한다.</p>	<p>임하되 5명 이상 10명 <u>이하</u>로 구성한다.</p>
<p>④ (생 략)</p>	<p>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조(심의결과 반영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는 한</u>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	<p>제9조(심의결과 반영)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<u>없으면</u> 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</p>
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</p>	<p>제10조(위원의 해촉)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.</p>
<p>1. ~ 3. (생 략)</p> <p>4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<u>아니한</u> 경우</p>	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<u>않은</u> 경우</p>
<p>5. (생 략)</p>	<p>5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<u>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</p>	<p>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「<u>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</u>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<u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</u>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상당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충청북도재무관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제13조(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)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「<u>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여비조례</u>」(이하 “여비조례”라 한다)를 준용하여 감독 1일당 일비(공무원 5급상당)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. 다만, 특별히 현지교통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비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
제32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·운영)

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6조(감독)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·하수도 사업,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감독 외에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(이하 “주민참여감독자”라 한다)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독업무 수행에 따른 실비(實費)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109조(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)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60조(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)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. <개정 2012.4.10, 2016.9.13>

1. 마을 진입로 확장·포장공사
2. 배수로 설치공사
3.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
4. 보안등(保安燈) 공사
5. 보도블록 설치공사

6. 도시·군계획도로 개설공사
 7. 마을회관 공사
 8. 공중화장실 공사
 9.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, 도로,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판단하는 공사
 10. 공원 공사
 11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
-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.<개정 2016. 9.13>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
-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용법령 명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.